

조례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혁여산담당면	1
2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행복나눔과]	6
3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혁여산담당면	10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23.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 9.

나. 발 의 자: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재화,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재화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및 표시를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적용범위(안 제3조)
- 3)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안 제4조)

- 4) 표지판의 설치기준(안 제5조)
- 5) 지원표시의 설치기준(안 제6조)
- 6) 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등(안 제7조)
- 7) 철거(안 제8조)
- 8) 비용부담(안 제9조)
- 9) 관리 감독 및 평가(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보조금지원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해 군민들이 보조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과 지원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지원표시”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를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제4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단체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기준)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표지판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현장에 설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에 설치.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이 경우 해마다 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제6조(지원표시의 설치기준) 지원표시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 등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등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 등의 설치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23.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 9.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2)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4)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

- 5)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6)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7) 대장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입양문화의 조성파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수당, 양육보조금, 의료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부.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상담 및 심리치료비
5. 입양아동 교육비
6.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제10조(홍보) 군수는 지역신문, 거창군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 ·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23.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24. 1. 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가. 제안이유
 - 다자녀 기준 완화, 만 나이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정부시책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자녀 기준완화(안 제1조~제9조)
 - 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 나) 18세, 19세, 24세, 25세 자녀 기준 ⇒ 24세 자녀로 통일
 - 24세 근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 의미: 학령기와 사회 적응을 위한 완충기를 포함한 나이

- 2) 만 나이 표현 정비(안 제9조~제12조)
 - 가) 나이 표현에서 “만” 삭제
 - 나) 근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 3) 행정안전부 권고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정비(안 제13조)
 - 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기산일: 기부채납일
⇒ 사용허가를 받은 날
 - 나) 근거: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 4)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경쟁제한 규정 정비(안 제14조)
 - 가) 지역건설 자재·기계·근로자의 “우선” 사용·고용 규정에서
“우선” 삭제
 - 나) “관급자재로 공급”과 유사한 의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정부시책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
-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맞게 나이 표현에서 ‘만’을 삭제 하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및 경쟁제한 규정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14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로 한다.

제2조(「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3조(「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4조(「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5조(「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 자녀”를 “둘”로 한다.

제6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감경률 100분의 50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24세 이하 자녀

제7조(「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

제8조(「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9조(「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감면율 100분의 100 감면대상 중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셋째자녀 이상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1명/1과목)”를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둘째 이상의 자녀가 24세 이하인 가구(1명/1과목)”로 한다.

제10조(「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1조(「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2조(「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 7세 이하”를 “7세 이하”로 한다.

제13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의 고용,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와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라 한다)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